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2가단11252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태길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권한빈, 이병한

변 론 종 결 2023. 6. 28.

판 결 선 고 2023. 8.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C[등록번호 : D, (대표자 사내이사 E) 사이에 2018. 12. 18. 체결된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F 주식회사[변경 전 : G 주식회사], 등록번호 : H, 대표이사 I]에게 위 제1항 채권양도양수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사이에 2016. 10. 10.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8억 원을 이율 연 12%, 이자지급일은 매월 20일, 변제일은 2016. 10. 31. 2억 원, 같은 해 12. 31. 6억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J 작성 증서 2016년 제00340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18. 12. 18. 별지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채무자인 소외 G 주식회사(변경 후 F 주식회사, 이하 'G 주식회사'라 한다)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9. 11. 28. 주식회사 K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증증서정보에 기초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타채10472호로 소외 회사가 G 주식회사로부터 받게 될 강원 인제군 L외 3필지 M아파트 공매대금으로부터 추가배분금액으로 수령할 금액 중 8억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20. 12. 11. 그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3. 6. 23. 기준 소외 회사에 대하여 1,329,540,99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고, 소외 회사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으면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으며, 사해의사 또한 인정되므로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G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양수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에게는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법리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불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5711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와 소외 회사 명의의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8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돈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훨씬 전인 2014. 6. 30. 2,430만 원, 2014. 12. 8. 2,000만 원 합계 4,430만 원에 불과하다.

나) 원고 주장대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계좌로 175,671,106원과 소외 회사의 대표 E 계좌로 686,540,000원을 지급하였다 할지라도 소외 회사 및 E가 지급받은 금액의 차이 등에 비추어 이를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다) 원고가 주장하는 입금 내역을 모두 인정한다 할지라도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돈을 입금한 것은 2014. 6. 30.부터 2014. 12. 23.까지 이고 2015. 4. 30. 이후에는 모두 E 계좌로 입금하였는바, 이는 E와의 개인적인 금전거래일 가능성이 높다.

라) 원고가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이자는 모두 E가 송금한 것으로 소외 회사의 계좌에서 이체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공정증서 상 채권액인 8억 원과 원고가 소외 회사 및 E에게 송금한 돈이 일치하지 않는다.

바) 이 사건 공정증서는 N이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등의 대리인으로 작성하였는데 N은 소외 회사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사람으로 소외 회사의 임원이 아니고 소외 회사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가정적 판단)

1)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205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받은 액수 및 양도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내지 채권양도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 내지 채권양도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소외 회사는 2018. 6. 15. 피고로부터 36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강원 인제군 L 외 지상에 건축된 M 아파트 100세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권 49억 원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해 준 사실, ② 그 과정에서 소외 회사를 운영하던 O, P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73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Q로부터 49억 원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조한 주식회사 Q 명의의 근저당권부 채권양도양수계약서와 R조합 명의의 이체확인증을 위조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1순위 근저당권부 질권설정등기까지 마쳐진 사실, ③ O, P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이 사건 채권양도 이후인 2019. 12. 3. 기소되어 처벌 받은 사실, ④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부 질권이 무효로 밝혀지자 소외 회사는 동일한 채무에 관한 담보로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하여 피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점, ⑤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별지 기재 채권을 양도받으면서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대출채무가 전부 변제되지 않는 한 피고가 직접 그 채권을 행사하여 변제에 총당하기로 약정한 점, ⑥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무 담보는 금전 차용 당시 이미 그 방법과 시기가 예정되어 있었고, 피고도 1순위 담보 취득을 전제로 소외 회사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

(별지)

채권의 표시

주식회사 C는, 강원도 인제군 L 외3필지 및 그 지상건물 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위탁자 주식회사 S과 F 주식회사(변경전 : G주식회사), 등록번호 : H, 대표이사 I]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과 관련한 제1순위 우선수익권자로서, 2018. 3. 16. 실시한 신탁 재산 공매에 따라 배당받아야 할 제1순위 우선수익권 한도금 26억원 중에서 신탁재산의 가압류로 배당 받지 못한 잔여 우선수익 한도 1,179,935,047원의 범위 내에서, 관련 소송(춘천지방법원 2018가합50485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11609) 결과에 따라 주식회사 C가 F 주식회사(변경전 : G주식회사), 등록번호 : H, 대표이사 I]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 또는 지급 받을 금원 전액. 끝.

